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사업 요약보고서

#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 통제필요성과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2012. 8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지방자치와 행정입법 .....	7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	7
제2절 행정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	9
제3절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	11
제3장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분석 .....	17
제1절 지방자치제도 .....	17
제2절 자치입법권의 한계 .....	17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상호관계 .....	18
제4절 결론 .....	19
제4장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강화 방안 .....	25
제1절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법 해석의 한계 .....	25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검토 .....	25
제3절 비교법적 고찰 .....	26
제4절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 .....	28
제5장 연구용약 .....	33
※ 현행지방자치법과 개정안의 비교표 .....	39

# 제 1 장



##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법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명제임. 국가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입법의 역할이 의회입법을 능가하고 있음. 거기에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면서 행정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대의 흐름이 되면서 중앙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편도 증가하고, 지방의회의 조례를 둘러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법과 법적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서울시의회는 입법과 입법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연구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입법의 문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입법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의회는 정책개발과 효율적 입법정책의 입안과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전문성 강화와 장기적인 역량강화 계획이 필요함
- 또한 행정부 주도의 행정입법에 대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입법관리 능력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원과 보조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시의회의 발전 계획이 필요함
- 그러나 지방자치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시의회의 입법기구로서의 역량

강화, 행정입법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와 정책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행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도 해석상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함. 그리고 현행법제도와 해석상 시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법제의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정책에 있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관련 법제 및 판례와 학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시의회의 본연의 기능회복과 역할개선을 그 목적으로 함
- 또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체계와 입법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입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행정입법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광역시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련 법제 및 판례를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정책에 있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과 역량강화에 필요한 행정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서울시의회의 본연의 기능회복과 역할개선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서는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와 행정입법과 관련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고찰하면서, 행정입법의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고찰

하고, 아울러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도 검토하였음

-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고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제도 전반적인 결정을 조사하여 검토하였음. 그리고 자치입법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하면서 대법원 판결들과 이론을 고찰하였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위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대법원 판결들을 검토하였음
- 제4장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입법 통제강화 방안으로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법 해석의 한계를 이론과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였음. 또한 현재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인 검토를 하면서,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서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 통제필요성과 강화방안에 대한 방향성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음

## 2. 연구의 방법

- 첫째, 문헌적 방법에 기초하였음.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규가 사실상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방법 즉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한국의 단행본과 연구논문 등을 참고문헌으로 하여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필요성과 강화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둘째, 관련 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는 방법에 입각하였음. 「헌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및 「헌법」 제118조 제1항, 제2항 등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과 판례들을 각각 검토·정리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용 내지 응용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는 고찰방식을 주로 택하였음
- 셋째, 법정책적 측면에 입각하였음.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법제도를 바로 알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의의와 가치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합리화·신뢰성을 구하고자 법정책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음
- 넷째, 행정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음. 기존의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는 지방행정학, 행정학, 통계학 등과 같이 법학적인 측면보다는 행정학이나 현황분석이나, 통계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판결의 분석과 행정법적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의회 즉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법적 접근 내지 연구가 부족했던 감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음. 그래서 본 연구는 행정법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음



## 제 2 장



# 지방자치와 행정입법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제2절 행정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 제2장 지방자치와 행정입법

###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 1. 지방자치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헌법적 가치인 국민주권의 실현을 최대화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며, 국민주권의 민주적 구현성·직접성·근거리성을 강화시키는 효과적 수단임
- 지방자치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며, 자치입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기본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민주적 의사형성과 결정과정이 보장되어야 함
- 지방자치는 일차적으로 지역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위한 것으로, 지역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도 생활관련성 하에서 공동체 의사형성과 결정과정의 참여가 인정될 수 있음
- 한국에서 지방자치의 연혁은 공동체문화의 특성이 강한 우리민족의 특성상 삼국시대 신라의 화백제도나 고려시대의 사심관제도, 향직단체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유향소, 향약, 향회, 계제도 등 전근대시대 이전 매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유래를 발견할 수 있음
- 대한민국에서 현행 지방자치의 시작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제헌헌법」 제96조와 제97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상보장의 근간을 이룸

- 1987년 헌법 개정과 1990년 12월 제9차 지방자치법개정 이후 제1차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제정이 이루어져 1991년 상반기부터 마침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게 되었음

## 2. 지방의회

- 우리나라에서 근대적·민주적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 구성되었는데, 이후 3기의 지방의회를 구성, 운영하다가 1961년 5월의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로 해산되었다가 이후 1990년 12월 15일 제9차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1차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을 거쳐 1991년 상반기에 현재의 지방의회가 구성됨
-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주민대표의 개념에 기초한 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지방의회는 관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와 관련한 대의정치를 실현하게 하는 장치로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주민대표기능, 집행부 견제·감시기능 등을 가짐

## 3. 현행 지방자치관련 법체계

-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와 자치입법권의 근거를 제시하며,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근거조항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② 시, 군, 구로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게 하고 있음

-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제2항은 자치입법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원리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해석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됨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정 조례가 자치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자율적 입법권일 때에는 법령의 한도 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협소한 자치입법권과 위임조례 위주의 왜곡된 자치입법의 현상을 향후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행정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 1. 행정국가와 행정입법

- 정부주도의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약화 경향과 함께 전속적 정책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에 의한 조례발의 영향력에 따른 의회기능의 약화를 초래함
- 의회와 정부의 대립과 갈등현상이 지방자치단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침

- 지자체에서의 단체장의 전시행정과 과시행정 현상이 재정악화로 치닫게 하면서 부실조례제정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점차 비대해지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 행정입법통제가 요구됨
- 자치단체장 주도의 행정입법으로 지방행정에 행정기획비용의 손실과 재정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회와 단체장의 행정입법에 대한 충돌과 갈등으로 인한 행정지연현상으로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함
- 시의회의원 발의 조례 또한 법령의 범위와 차지사무의 영역 내에서 담아내지 못하여 입법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행정입법통제를 통하여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한 입법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행정입법 갈등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강시장-약의회형의 구도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단체장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에 조례제정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거나, 자치단체를 지휘·감독하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소속정당이 불일치할 때 자치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정부와 다른 정당소속의 시장 그리고 의회가 정부와 다른 정당소속의 의회의 다수파로 구성이 될 때 정책입법과 관련하여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서울시의 경우 제8대 의회 출범 후 「서울광장 사용조례」(약칭) 개정안이 재의요구된 것을 비롯해 2012. 5.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제출되기까지 2년도 동안 무려 12건(1건은 2011년도 예산안)의 재의 요구가 있었음
- 1995년 지방자치단체 출범한 이후 20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건수는 총829건(지방자치단체장 발의 조례337건, 지방의원발의조례 492건, 계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추세임)
- 1991년 ~ 2010년 6월까지 제소유형은 전체 124건의 제소 중 법률유보가 20건으로 16.1%였고, 법령위반이 37.1%인 46건, 그리고 권한침해가 46.8인 58건으로 나타나 권한침해, 법령위반, 법률유보의 순으로 나타남
- 시·도조례의 경우 법령위반이 40.0%로 가장 많았지만, 시·군·구 자치단체조례의 경우 권한침해가 5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995년~2010년까지 15년간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의 대법원제소현황은 제소건수 총122건 중 장관이 제소한 경우가 6건, 시·도지사가 제소한 경우가 50건, 시·군·구청장이 제소한 경우가 66건이며, 제소결과 절반이상인 62건이 무효판결을 받음으로써 무리한 입법추진과 필요이상의 입법갈등이 있었음을 반영함(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제3절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 1. 행정입법통제의 의의

- 자치입법 추진시 사전, 사후에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위법조례·

위법규칙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불필요한 입법과 관련한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것을 말함

- 지자체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분쟁의 사전적 예방을 통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소송이 감소될 수 있음
- 상위법 위반 조례에 대한 중앙부처 등의 재의요구지시와 대법원 제소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데 효율적 행정입법통제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그 가치가 매우 높음
- 행정입법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의 자생력을 향상하고 자치입법의 질적인 개선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 시장제출 조례발의안과 규칙, 시의원 발의조례 등 양자에 모두 행정입법 통제와 입법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2.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과 방향

-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들어 단체장들의 전시행정과 과시행정의 근거가 되는 자치입법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재정 상황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안 발의부터 합리적 통제와 관리가 요구됨
- 집행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의회는 조례제정의 최종적 결정권과 예산결정 그리고 행정감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해결하고, 의회의 잘못된 행정입법의 문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여론을 통한 통제와 사



법기관을 통한 사후통제로 해결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는 국가기능의 일부분으로 행정권에 대한 수직적인 권력분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력주체로서 국가와 수직적인 권력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향후 독자적인 행정주체로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고유한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함
- 국회나 정부의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모두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입법권의 분권화를 통하여 국회의 입법 부담을 경감하고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적인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게 함
- 행정입법에 대한 지방의회의 법률상 보장된 직접적 통제장치는 없으나 잘못된 행정입법에 대해 조례개정을 통한 통제는 가능함
-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구체적 소송을 통해 행정입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위헌(위법)판결을 내려서 조례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것임
-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서 법제처의 자치법규에 대한 법령위반여부와 위임사무인지 고유사무인지 ‘정부유권해석’을 활용하여 조례의 정당성을 확보가 필요하며, 주민예산참여제도와 입법·법률고문제도 그리고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행정(자치)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가 필요함
- 지방의회의 기능을 회복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의 방향은 국회입법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의 위상을 존중하여 자치입법권행사에 대한 자율성을 더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법률적 조치로는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고, 즉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특히 고유한 자치사무에 속하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함이 타당함

## 제 3 장

# 지방사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분석

제1절 지방자치제도

제2절 자치입법권의 한계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상호관계

제4절 결론



## 제3장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분석

### 제1절 지방자치제도

-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의 내용이 입법으로 규율된다는 입장임
- 즉 본질적 내용의 침해만 없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 지방자치·분권화와 함께 지방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주장에 따라 현재 헌법을 개정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이고, 국회미래헌법연구회가 편찬한 책에서도 지방자치의 중요한 내용을 헌법에서 규정하여 헌법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함
- 그러나 헌법이 그렇게 개정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음

### 제2절 자치입법권의 한계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근거와 한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간단하지 않음

- 좁은 국토와 전국적인 평등의식을 감안할 때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음
- 앞에서 본 국회미래헌법연구회의 자료처럼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지방자치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가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현행 제도의 개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상호관계

-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이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취지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폐기,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개정된 규칙의 내용이 지방의회의 조례를 위반하거나 상치될 때, 지방의회는 그 규칙을 폐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또한 사전에 규칙 즉 조례의 위반성을 지적하는 절차를 국회의 대통령령 통제방법과 같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4절 결론

-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방자치의 구체적 내용의 대부분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어 지방자치권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기본결단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국회입법권에 대한 자치입법권의 배분문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적용배제문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개정 없이 지방자치법 등 법률적 차원의 개선이 요구됨. 또한 다른 접근 방법으로 국회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 현행 헌법에서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출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것임
-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지방자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지방자치본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 관계를 전제로 현행 지방자치법이 합헌임을 인정하고 있음. 오랜 기간 동안의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제정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국가사무 수행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임

-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역량 부족과 지역이기주의 형태에 따른 불신으로 법률로써 국가사무로 규율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자치입법권의 한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음.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관계를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음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상호관계를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음 즉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음
-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의 고유권을 보호하고 상대방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지방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하는 조례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개정된 규칙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의 대통령령 통제 방법을 참고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이 있음



- 결국, 현행 헌법의 존재와 무흠결성을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판단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인정하자는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사법부의 이러한 해석은 국법질서 확립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요한 해결방안은 지방자치법과 헌법개정논의와 그 실천에 의해서 마련해야 할 것임



## 제 4 장



#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강화 방안

제1절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법 해석의 한계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검토

제3절 비교법적 고찰

제4절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



## 제4장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강화 방안

### 제1절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법 해석의 한계

- 지방자치의 강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위치정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대등하고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제도의 설계와 시대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해석이 필요함
- 왕조시대를 거치고 외세에 의한 역사단절과 함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형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던 현실과 대륙법계위주의 법해석 이론이 지배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 지방자치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임
- 지방의회의 조례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공통점인 민주성, 대표성, 절차성, 과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례와 법률의 실질적 동일성에 대한 검토와 전향적 해석이 필요함

###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검토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시작이며 헌법상의 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를 주민의 행복추구와 인간존엄회복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인식하여, 권력분립을 통해 주민의 공리를 최대화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을 다양해야 함.

-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의 통제가능성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또한 자치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해 제정되는 규칙에 대해서도 조례가 통제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 더구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개입가능성은 차단됨.
- 개입과 견제가능성의 차단은 정치적 투쟁과 소요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며, 민주적 정당성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충돌하는 경우 지역의 분열과 단절로 인하여 종국에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고 정치회의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형해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제3절 비교법적 고찰

- 각 국가의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문화와 사회상황과 역사적 변화물결을 이해하지 않으면, 법제도 자체를 오해할 소지가 상존함. 특히 지방자치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발전과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전함
-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체제하에 존재하여, 주법을 위배할 수 없지만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으며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헌장과 조례가 우월하며, 조례로써 벌금을 부과하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규제를 주정부의 명시적 위임 없이도 주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회의 조례로써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전통적인 중앙집권국가로 분류되는 일본과 프랑스의 일련의 변화움직임은 기존의 중앙 집권형 단일국가형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한다고 사상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국의 변화임. 즉 세계의 변화모습은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하게 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통합을 통해 국민의 통합과 자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큰 흐름을 보이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하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인식의 전환의 시작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진정한 권력분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강화와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균형수단을 현실화해야 함
-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강화를 위해 단체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하고,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사무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은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의 역할분담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함. 또한 법정수탁사무라는 것도 단순히 국가의 수탁에 의해서 처리하거나 국가로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다만 법령에 의해 사무처리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됨을 의미함. 그래서 다른 지방사무의 경우는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확대 강화됨
-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는, 사무이전은 반드시 재원이양을 수반하는 원칙을 택하고 있음도 중요한 지방분권실현의 전제기반임
- 독일의 경우는 연방국가 이면서, 주정부도 독자적인 헌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과 달리 연방 기본법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의 보장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선거는 국민의 범위를 넘어서 유럽회원국의 국적을 보유한 주민으로 확대된 특징을 보여줌

- 독일의 공법이론이 우리나라의 근대이후 법학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론이 우리에게 아직도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당위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 조례제정권에 대한 관념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독일에서도 조례제정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한 국가 혹은 주정부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보이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의원내각제형 지방자치단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 위원회형 지방자치단체 등등 있음. 현재 우리 헌법도 헌법의 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임을 조명해야 할 시기임
- 즉, 지방자치차원에서 현재 일부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의원내각제형 국가 등등의 정치적 실험을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험의 장인 지방자치에서 다양한 형태를 조례와 주민투표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제4절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

- 지방의회의 기본적 기능인 조례제정권을 회복하고 조례를 통해서 규칙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기술적 측면의 행정권한 행사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을 조정해야 함
- 이런 지방자치의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지방자치법만의 개정으로도 달성될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정립을 명확히 하는 것임



- 분명한 것은 지방분권이 더 이상 행정권의 분산이거나,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이라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임
- 건국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규정이 단2개에 불과하지만 독립된 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명문으로 권력분립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3권 분립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며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도구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음
-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은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존엄”이며, 이를 안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면서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음
- 헌법은 죽은 법이 아니라, 살아서 숨 쉬어야 할 법이며 살아 있는 헌법을 형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시대정신이지만, 이 시대정신을 이끄는 요소에는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있음. 다만, 최종적으로 헌법을 살아있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임
-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살아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국민의 열망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표출되어 헌법을 개정하게 됨
- 헌법 개정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준비되고 마련될 수 있지만, 그 원동력과 발현은 국민이며, 그 국민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시키길 진정으로 소망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시기가 왔음
- 헌법 내용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제도적 보장이나, 단순한 수직적 권력분립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협력과 조화를 통해 나아갈

동반자적 기능을 확인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하여 국가전체의 통합과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이 필요함

## 제 5 장



### 연구 요약



## 제5장 연구요약

-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행정입법을 둘러싼 충돌과 갈등으로 인한 행정 지연현상은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함
- 행정입법통제를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사전·사후에 심도 있는 분석·검토를 통하여 위법조례와 위법규칙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치유 함으로써 불필요한 입법과 관련한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조례·규칙에 대한 신뢰확보에 기여한다는 것을 말함
- 또한 국가입법과 자치입법간의 규범적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자치입법사항에 대한 통제관리가 필요함
-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방자치의 구체적 내용의 대부분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어 지방자치권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기본결단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국회입법권에 대한 자치입법권의 배분문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적용배제문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개정 없이 지방자치법 등 법률적 차원의 개선이 요구됨. 또한 다른 접근 방법으로 국회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지방자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지방의회의 기본적 기능인 조례제정권을 회복하고 조례를 통해서 규칙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기술적 측면의 행정권한 행사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을 조정해야 함
  
- 지방자치의 목표와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지방자치법만의 개정으로도 달성될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정립을 명확히 하는 것임
  
- 분명한 것은 지방분권이 더 이상 행정권의 분산이거나,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이라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임
  
-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은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존엄”이며, 이를 안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면서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음
  
- 향후 지속적인 지방자치법 이론연구와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법리적 근거 하에 지방자치사무의 고유영역과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범위와 한계의 명확한 설정을 기반하여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의 틀 내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입법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의 규정에서 정부가 제정한 행정입법(법규명령) 등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제도를 두고 있음. 지방의회의 차원에서도 서울시의회의 경우 행정입법(조례)에 대한 연간 조례제정계획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 있으나 이를 규칙 기타 사항으로 확대하는 것이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의 측면에서 유효할 것임

- 또한 자치입법의 체계적 정당성의 확보와 질적 개선을 위하여 입법통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는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합목적성과 입법의 경제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자치사무 영역범위 내에서 규칙에 대한 검토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에서 지방이양사무는 종전처럼 국가가 기피하는 업무를 지방에 미루는 식의 이양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사무이양이 필요함
  
- 앞의 연구를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지방자치의 정책적 목표달성과 행정입법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통제·관리를 통하여 조례·규칙에 대한 입법통제·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때 오히려 법제업무의 자생력 강화와 행정입법(조례·규칙)의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목차

<p><b>제1장 서론</b></p> <p><b>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b></p> <p><b>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의 범위</li> <li>2. 연구의 방법</li> </ol> <p><b>제2장 지방자치와 행정입법</b></p> <p><b>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의의</li> <li>2. 지방자치의 연혁</li> <li>3. 지방의회 등장과 활동</li> <li>4. 현행 지방자치관련 법체계</li> </ol> <p><b>제2절 행정입법의 현황과 문제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국가와 행정입법</li> <li>2.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행정입법 갈등현황과 문제점</li> </ol> <p><b>제3절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입법 통제의 의의</li> <li>2.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li> <li>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행정입법 갈등원인</li> <li>4. 지방의회의 행정입법관련 통제의 방향</li> <li>5.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갈등에 대한 대응과 행정입법통제</li> </ol> <p><b>제3장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분석</b></p> <p><b>제1절 지방자치제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와 제도보장</li> <li>2. 지방자치본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li> <li>3. 소결</li> </ol> <p><b>제2절 자치입법권의 한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입법권</li> <li>2. 대법원 판결분석</li> <li>3. 소결</li> </ol>	<p><b>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상호관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li> <li>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li> <li>3. 대법원 판결분석</li> <li>4. 소결</li> </ol> <p><b>제4절 결론</b></p> <p><b>제4장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강화 방안</b></p> <p><b>제1절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법 해석의 한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의회 관련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li> <li>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련 지방자치법규정</li> <li>3. 지방자치법규 해석론의 한계</li> </ol> <p><b>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검토</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li> <li>2. 권력분립과 지방자치</li> <li>3.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역할 변화</li> </ol> <p><b>제3절 비교법적 고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국</li> <li>2. 일본</li> <li>3. 프랑스</li> <li>4. 독일</li> <li>5. 시사점</li> </ol> <p><b>제4절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론</li> <li>2. 지방자치법상 제도개선</li> <li>3. 서울시 조례와 규칙상 제도개선</li> <li>4.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와 헌법</li> </ol> <p><b>제5장 결론</b></p>
--	---



**별첨자료**



**연행시방사치법과 개정안의 비교표**



※ 현행지방자치법과 개정안의 비교표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	개정안 설명
<p>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본 법은 <u>헌법이 정한 바와 같이</u>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u>기본적으로</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u>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u>를 구체화함으로써 <u>지방분권</u>을 민주적이고 혁신적으로 수행하고, <u>지방정부가 균형있게 발전하며, 그 창의성과 다양성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가 헌법차원의 원리임을 분명히 함</li>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대등하고 협력적 관계를 분명히 함</li> <li>▶ 지방정부는 표현을 사용하여 중앙정부(국회, 정부, 사법부)에 대비시킴</li> <li>▶ 지방자치의 정신을 구체화함 (균형발전, 창의성, 다양성, 자주성, 주민복지, 국민통합, 국민행복)</li> </ul>
<p>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p>	<p>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구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u>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두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방자치법의 직할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두고 있었음. 그러므로 "직할"을 삭제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가 존재함</li> <li>▶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li> </ul>

<p>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p>	<p><u>시, 군, 자치구를 둔다.</u>  <u>③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의회를 두며, 집행기관의 구성과 집행기관의 장의 선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그 지역 주민투표로 정한다.</u></p>	<p>체의 구조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을 서술함</p> <p>▶ 지방분권이 자율적이며, 창의적 역동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구성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함</p>
<p>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p>	<p>제8조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기본원칙)          ① 국가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한다. 지방사무는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한다.          ② 국가사무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p>	<p>▶ 지방자치사무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지방분권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사무처리부담만 전가되며 그 사무처리의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의 하도급형 공법인으로써 업무과중에 시달리게 됨</p> <p>▶ 개정안은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사무처리의 비용을 국세와 지방세조정 그리고 지역격차를 고려한 형평적 배분제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함</p>

	<p>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p> <p>5.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p> <p>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p> <p>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 (자치사무)</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다음과 같다. (현행규정정리후 배열 + 지역물가정책, 근로기준, 등등 추가 )</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자기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은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과 지방의 형평성을 고려한 분배제도를 통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 중 그 사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무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로 본다.</p>	<p>▶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p> <p>▶ 지역물가정책, 근로기준은 자치사무로 배열함</p> <p>▶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p> <p>▶ 자치사무처리의 비용을 국세와 지방세조정 그리고 지역격차를 고려한 형평적 배분제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함</p>

	<p>제10조 법정수탁사무</p> <p>① 국가사무중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법정위탁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마련할 수 있다.</p> <p>② 법정수탁사무처리 비용은 국가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p> <p>③ 법정수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감사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p>	<p>▶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체계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단순히 구분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로 흡수함</p> <p>▶ 기존의 기관위임사무 중 국가사무로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한 사무에 대해서만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함</p> <p>▶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견제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p> <p>▶ 지방의회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도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여지를 확보함</p>
<p>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p>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u>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u>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p>	<p>▶ 판례의 변화를 수용하여 명시적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변경함</p> <p>▶ 현재 문제가 되는 단서부분을 삭제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닌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p>

<p>제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법령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과 조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u>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마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과 지방의회의 조례의 상하관계를 확실히 함</li> <li>▶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닌 주민의 대표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 수권을 받은 사항과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 없는 단순한 내부 사무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과 조례의 위임 없이도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li> </ul>
<p>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p>	<p><b>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처벌)</b>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과태료 등을 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닌 직접 선출된 대표에 의해 마련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임</li> <li>▶ 조례로써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둠</li> <li>▶ 일본의 경우도 이미 형벌을 조례로 부과하고 있으며,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음</li> </ul>
<p>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p>	<p>제28조(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상하관</li> </ul>

<p>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룰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공포예정일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조례는 지방의회의 장이 규칙의 경우 집행기관의 장이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조례와 규칙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회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계가 아니라 대등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기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고라는 용어에서 제출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p> <p>▶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칙을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제도를 신설(국회법 제98조2 참조)</p> <p>▶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법 질서 속에 존재하기에,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조례와 규칙을 업무협력차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행정기관장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통보될 수 있도록 함</p>
<p>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p>	<p>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u>입법기관인 지방의회</u>를 둔다.</p>	<p>▶ 지방의회의 위상이 단순한 행정기관의 일부가 아닌, 입법기관의 지위를 명시함</p>
<p>제60조 (위원회에서 방청)</p> <p>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p>	<p>제60조(위원회에서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속위원회 3분의 1이 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며 위원장은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p>	<p>▶ 지방의회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실험하는 무대이므로,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공개하도록 함</p>



<p>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상시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의회회의 투명성, 효율성, 주민참여성을 제공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p>
<p>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p> <p>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b>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b>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과 소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례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li> <li>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반드시 10일 이상으로 한다.</li> </ol> <p>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누구나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의장과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p>	<p>▶ 조례의 지위가 단순한 행정입법이 아니,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작용하는 입법기능이 회복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담보장치기 필요한 바, 조례의 입법예고는 필수적 장치임</p> <p>▶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반드시 10일 이상 하도록 함</p> <p>▶ 단순히 요식행위로서 입법예고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제출과 그 반영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둠</p>

	<p>취하여 하며, 의견수렴결과를 통지 및 공지하여야 한다.</p> <p>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의회규칙</u>으로 정한다.</p>	
<p>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p> <p>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p> <p>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p>	<p>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p> <p>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u>입법지원처</u> 등을 둘 수 있으며, <u>각 처에는 처장과 직원을 둔다.</u></p> <p>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무국·입법지원국 등 국이나 사무과·입법지원과 등 과를 둘 수 있으며, 각국·각과에는 국장 또는 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u></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u>처장·국장·과장 및 직원</u>(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④ <u>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혹은 집행기관에서 퇴직 한 공무원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없다.</u></p>	<p>▶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독립성·전문성제고가 필수이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지방의원의 독립성·전문성만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 기관의 독립성·전문성 그리고 기관의 구성원인 지방의회공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로 함</p> <p>▶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의회내에 둘 수 있는 처를 다양화함. 또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직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함</p>
<p>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p>	<p>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p>	<p>▶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독자</p>

<p>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p> <p>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p>	<p>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b>사무기구와</b> 사무직원의 정수는 <b>지방자치단체의 크기, 주민수, 사무의 종류 등을 고려</b>하여 조례로 정한다.</p> <p>②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사무직원은 공개시험과 선발과정을 통해 사무처장이 임명한다.</p> <p>③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직·연구직 직원의 경우에는 의회규칙으로써 그 선발과 채용을 <b>다로</b>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수·신분보장·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p>	<p>적인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입법기관의 기능과 지위를 회복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기관구성권을 보장하고, 직원임명권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독자성을 확고히 함</p>
<p>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p>	<p>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p> <p>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조례와 주민투표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임방법을 변경하는 조례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된 조례는 주민</p>	<p>▶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고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내의 기관구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p> <p>▶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와 경제적 상태, 주민의식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형 지방정부, 의원내각제형 지방정부, 수장형 지방정부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구조가 출현할 수 있음</p> <p>▶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의</p>

	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	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우수하고 적합한 모델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p>제96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lt;개정 2009.4.1&gt;</p> <p>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u>지방의회의원</u></p> <p>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p> <p>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p> <p>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p> <p>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p> <p>6. 교원</p> <p>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p>	<p>제96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lt;개정 2009.4.1&gt;</p> <p>1.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p> <p>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p> <p>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p> <p>4.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p> <p>③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범위와 한계를 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p>	<p>▶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구조의 출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겸직가능성을 허용해야 함</p> <p>▶ 위원회형 지방자치단체의 출현을 위해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정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p> <p>▶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사정, 크기, 주민수에 따라 그 직무의 복잡성과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겸직하여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례로써 허용할 수 있도록 함</p> <p>▶ 중국에는 무급의 봉사직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존재할 수 있도록 함</p> <p>▶ 민주주의의 실험의 장이며 풀뿌리민주주의 현장인 지방에서 주민의 선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p>

<p>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p>		<p>정치실험이 가능하게 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체 국가의 정치발전과 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둬</p>
<p>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p>	<p>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u>조례에 위임에 따라 제정된 규칙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 조례와 규칙의 상하관계를 분명히 설정하면서도 일반적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집행규칙으로도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p> <p>▶ 하지만, 외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조례나 조례에 구체적 위임인 있는 경우에만 규칙으로 위탁을 정할 수 있도록 함</p> <p>▶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도,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행정입법권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함</p>

<p>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도, 사무의 성질상 기초지방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p>	
---	--	--

서 명(書名) :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 통제필요성과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요약본)

출 판 : 2012년 8월 6일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 배 병 호  
공동연구원 : 고인석, 김성배  
연구보조원 : 임진석, 정찬우

발 행 인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발 행 처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연 락 사 항 : 서울특별시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특별시의회  
전화 02-3702-1550 전송 02-3702-1560

한국입법학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2-0(운니동, 삼환기업(주))  
전 화 : 02-760-0593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